2021년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Q&A

<사업개요>

Q1.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목적)**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의 기부금을 활용, 코로나19하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추진
-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원요건)** ①~③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사업공고일('21.4.6.) 현재 공적DB*에 등록되어 지원대상 직종*에 종사중인자로

  *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② '20.1.1.~12. 31. 기간 중 월 60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21. 4. 6.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2개 직종에서 일한 경우 근무기간 및 시간 합산)

  ③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일 것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 확인(다만, '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내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4.12.(월)~4.23.(금)**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4.12~4.23, 12일), 원활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1주차 5부제 시행

  * 전화상담은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1644-0083**) 적극 활용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4.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Q2. 한시지원금은 무슨 말인가요?

- **(한시지원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21년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청대상>

Q3. 방문돌봄종사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 **(사업대상)** 공적DB에 등록된 방문돌봄종사자(7개 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지원대상)**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임

Q3-1. 공적DB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적DB)**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확인되는 DB를 말하며, 각 직종별 DB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DB)
▸ (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여성가족부DB)
▸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DB)

<신청자격>

Q4.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한가요?

- **(7개 직종)** 공적DB에 등록된 ①가사간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산모신생아서비스, ④아이돌보미, ⑤요양보호사, ⑥장애아돌봄, ⑦ 장애인활동지원사 - 방문돌봄종사자만 신청 가능하고, '20년도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신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

Q4-1. 방문돌봄종사자에만 해당되면, 누구나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규모)** 예산상 한계 및 사업취지 등을 고려 최종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자 우선 선발

Q4-2.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방문돌봄 사업 또는 협회에서 수행하는 방문돌봄에 소속되어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 **(공적DB 기준)** 공적DB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재직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적DB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문의 필요

Q5.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적인 소개로 돌봄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지?

○ **(사업대상 여부)** 해당되지 않음

○ **(지원대상)** 동 사업의 방문돌봄종사자는 개인간 계약은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 신분으로 서비스 이용기관과 계약에 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원대상임

Q6.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대상 여부)**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기 위한 조건이고, 건강보험공단 DB에 등록되어 '20년도에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Q7. '20년 연간 소득 1,300만원은 돌봄종사자로서의 소득만 인정되나요?

○ **(소득요건)** '20년 귀속 지급명세서상 소득금액*확인(돌봄종사자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임) 다만,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가능)

Q8. '20년 실제소득은 1,300만원 이하이나,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으로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지?

○ **(소득요건)** 국세청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불가능. 기부금 재원의 한계 등을 고려한 최소 기준임

Q9. 제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 **(재직요건)** 본인이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 필요

Q9-1.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소속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 사업장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 **(재직요건)**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을 합산함(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이 60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9-2.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으로 아는데,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두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면, 각 직종별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 **(재직요건)** 모든 직종의 근무기간을 합산함. (근무기간 합산은 최저 재직요건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 직종만의 근무시간이 60시간 6개월 이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

Q10. 학교장 확인서 말고 다른 서류로는 인정이 안 될까요?

○ **(제출서류)**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체결 학교장 확인서(학교장 직인 必) 외에는 인정 불가

* 위탁업체 소속의 경우에도, 학교장 확인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

Q11. '20년도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 **(중복수혜 여부)** 지원대상임. 다만, '21년도 3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거나,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Q11-1. '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입니다.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중복수혜 여부)** 지원대상임. 단 동 지원금 수급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미지급하나,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이연하여 남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 분할지급(총액 유지)

<지원금>

Q12.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수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시면 1인당 50만원이 본인계좌로 지급됨

<신청방법 · 지급>

Q1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 4월12일(월)부터 4월23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Q13-1. 정상적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신청방법)** 정상적으로 신청된 경우 정상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됨

Q13-2. 본인인증만 하면 접수가 끝난 걸까요?

○ 본인인증 후 신청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접수가 최종적으로 마감됩니다. 정상 접수 되는 경우 '해당 접수번호로 접수되었다'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Q14. 신청서 작성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접수는 안될까요?

○ **(신청방법)** 4월12일(월)부터 4월23일(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복지사업 전담 콜센터(1644-0083) 안내를 받으시거나,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재직중인 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Q15.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이 현재 정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신청방법)** 핸드폰 인증뿐만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인증도 가능함

Q16.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은 안될까요?

○ **(지급방법)**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압류통장에 입금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음

** 압류방지통장 등으로는 입금 불가능

<지원자 선정 탈락>

Q17. 제가 왜 탈락됐나요?

○ **(탈락사유)** 기부목적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제한함에 따라 1차적으로 자격 적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적격심사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탈락 사유 및 이의신청 안내 예정

Q18. 이의신청 할 수 있을까요?

○ **(이의신청)** 가급적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공적DB를 연계하여 심사함에 따라 착오 회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 여부 개별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검토 예정임

- 공단에서 지정한 서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도록 안내 예정

<방문돌봄종사자 지원사업 1차 vs 2차 주요변경사항>

<table>
<tr><th>구분</th><th>1차</th><th>2차</th></tr>
<tr><td>지원대상</td><td>○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td><td>○ 공적DB*에 등록된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지원대상 명료화</td></tr>
<tr><td>재직요건</td><td>○ 사업공고일 현재 보건복지부 등 공적DB에 해당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상태</td><td>○ 사업공고일 현재 공적DB에서 해당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방문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 직종별 공적DB 명시(아래)
<table>
<tr><th>직종</th><th>공적DB 제공기관</th></tr>
<tr><td>요양보호사</td><td>건강보험공단</td></tr>
<tr><td>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td><td>사회보장정보원</td></tr>
<tr><td>아이돌보미</td><td>여성가족부</td></tr>
<tr><td>노인맞춤돌봄</td><td>보건복지부</td></tr>
<tr><td>장애아돌봄</td><td>한국장애인개발원</td></tr>
</table></td></tr>
<tr><td>소득요건</td><td>○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20년 신규 종사자의 경우 '20년 원천징수부 상 연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td><td>○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단, '19년 귀속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불가)</td></tr>
<tr><td>수혜인원</td><td>○ 9만명</td><td>○ 6만명</td></tr>
<tr><td>제출서류</td><td>○ 방과후강사 : 학교장 확인서
○ 방문돌봄종사자 : '20년 원천징수부, 근무시간 확인서류 등</td><td>○ 방과후강사 : 학교장 확인서
○ 방문돌봄종사자: 제출서류 없음</td></tr>
</table>